

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모집공고

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(예비창업자)를 대상으로 입주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8월 26일
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
I 모집개요

○ 모집대상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

○ 계약기간: 3년(1년 단위 계약 진행)

※ 4년차부터 연장심사 후, 통과 시 재계약 진행

○ 모집규모: 3개실

33평(108.9㎡)

41평(135.3㎡/16평+25평 두 개 호실 결합)

49평(161.7㎡)

○ 지원내용

- 연 1회 사업화 지원

(컨설팅비, 시제품 제작, 홍보마케팅비, 지식재산권 등록/출원 등)

※예산 소진 시 사업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- 기타 편의시설 제공 (커피 머신, 공용정수기, 화장실, 팩스)

- 공용창업공간 제공 (세미나실, 빔프로젝터 제공)

- 화상회의실 제공 (화상 회의 장비 제공)

Ⅱ 자격 요건

- 신청 자격: 공고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 이거나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
- 입주 형태: 본사 입주 또는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로 입주 가능

입주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- 입주일자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휴업중인 자(기업)
- 기존 사업 폐업 후 3년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
- 소음, 공해 등을 유발하는 업종
- 창업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(기업) [첨부.참조]

참고사항

-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(창업 아이템 관련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함)
- 사업화지원 신청 자격은 입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

Ⅲ 부담금 안내

- 월 보육료: 1~3년차 평당 3만원 (부가세 별도)
4년차부터 평당 4만원 (부가세 별도)
- 보증금: 평당 20만원 (10평 이하는 200만원 고정)
- 관리비: 전기, 수도, 오물처리비 등 기본료 + 실비 청구
(교내 시설관리팀에 별도 부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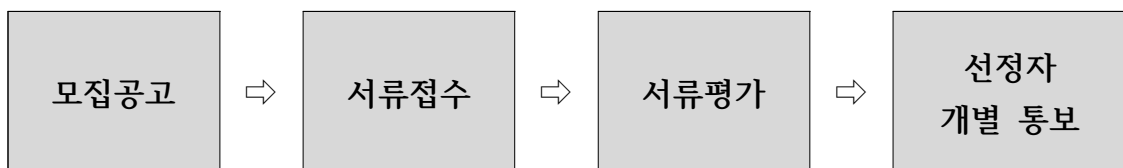
- 유선전화 및 인터넷: 기본 인터넷 제공(고정IP), 전화는 자부담 설치

III 접수 안내

- 접수기간: 상시 모집(선착순 마감)
- 제출서류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(공고 게시글 첨부 자료)
 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 -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
 - 지식재산권 사본 1부(해당자)
 -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(해당자)
 - 창업기업확인서 1부(기창업자에 한함/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조회)
- 접수 방법
- 이메일 접수: mgb129@mju.ac.kr
(파일명 : 명지대BI 입주신청서_김아무개)
- 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※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 누락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
IV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

- 서류평가: 1~2주 단위로 접수된 서류를 취합하여 신청 자격 검토
- 사업계획서를 통해 우리 센터에서 사업하기에 적합한지 검토
 -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과 성장 가능성 검토
- 최종선정: 심사위원을 통해 최종 선정자 확정



우대 사항

1. 창업 아이템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자 (출원 건 제외, 등록(권리권)만 해당)
2.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과제 수행 또는 정부 주관 창업 관련 수상자(표창)
3.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기관 창업 교육 이수자
4. 성과공유제 도입 및 협약 기업
5. 장애인, 여성, 사회적, 제대군인 기업

○ 결과발표: [개별통보](#)

○ 문의처

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김민성 매니저

Tel. 031-324-1151 / E-mail. mgbi129@mju.ac.kr

※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시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.



유의사항

○ 유의사항
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제출 서류상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입주 취소 등의 조치 받을 수 있음
- 입주 후 사업화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혜 및 타 기관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 시 환수 및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음
-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」 및 「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」에 따르며,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(첨부)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구 분	대상 업종
1	금융 및 보험업
2	부동산업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4	무도장운영업
5	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